

# 벤처대학원 학칙 시행규칙

##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학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 26)

**제2조 (적용)** 대학원의 학사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 제 2 장 입 학

**제3조 (입학절차)** 대학원의 입학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입학지원서류 제출
2. 서류심사 (개정 2014. 4. 21)
3. 면 접
4. 입학사정
5. 합격자 발표
6. 입학등록

**제4조 (지원구비 서류)** 대학원 입학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소정의 기일내에 전형료와 함께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소정용지)
2. 대학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3. 대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4. 소정의 수험료

**제5조 (입학전형 구분)** ①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② 일반전형에 지원자가 미달되었거나 시험성적이 합격 점수에 미달되었을 때에는 그 인원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다.

**제6조 (일반전형 방법)** ① 대학원 각 과정의 입학 전형은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으로 한다. (개정 2015. 1. 26)

② 평가는 대학원위원회에서 학과 과정별로 따로 시행한다.

③ 평가 위원은 석사과정은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박사과정은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0. 3. 1, 2015. 1. 26)

**제7조 (특별전형 지원자격)**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1. 국, 공, 사립의 전문연구소 과장급 이상
2. 산업체 및 산학연구소 5년이상 실무 및 연구경력자
3. 대학의 전임교원
4. 4급이상 공무원 또는 7년이상 중등교원 경력자
5. 위와 유사한 여타분야의 전문가
6. 외국인 학생

**제8조 (특별전형 방법)** 특별전형은 서류전형 및 면접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 하에 서류전형만으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4. 4. 21)

**제9조 (외국인 학생의 입학전형)** 외국인 학생의 입학전형은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으로 한다. 다만, 해외거주자의 경우 온 라인(on-line)을 통한 구술시험으로 면접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1)

**제10조 (배점 및 합격기준)** 대학원 입학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최저 점수는 다음과 같다. 그러나 각 전공별로 성적 또는 총점에 있어서 합격 인정에 필요한 점수를 그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1. 서류심사 :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입학할 공식적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며 점수화 하지 않는다. (개정 2015. 1. 26)
2. 면접 : 학술연구의 능력과 적성, 인성, 지원학과(또는 전공)와 관련된 분야에 해당하는 전문지식 및 응용능력 등을 심사하며 합격기준은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 1. 26)

**제11조 (편입학 지원자격)** 각 학위과정에 편입학을 지원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편입 전 대학원에서의 정규등록 학기수와 이수학점에 따라 다음과 같다.

학위과정	편입학기	지원자격	
		정규등록 학기 수	이수학점
석사과정	2	1학기 이상	6학점 이상
	3	2학기 이상	12학점 이상
박사과정	2	1학기 이상	6학점 이상
	3	2학기 이상	12학점 이상
	4	3학기 이상	18학점 이상

**제12조 (편입학 전형)** 편입학 전형은 특별전형방법에 준하여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 (편입학생의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편입학생의 수업연한과 재학연한은 우리대학원에 편입학한 학기에 따라 적용 받는다.

**제14조 (편입학생의 학점인정)** ① 편입학생의 편입 전 대학원의 학점은 편입학생의 입학 전에 해당 학과장과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석사과정은 12학점, 박사과정은 18학점까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② 유사과목은 전공으로 인정하며 나머지 과목은 공통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4. 4. 21)

**제15조 (재입학생의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재입학생의 수업연한과 재학연한은 제적전의 수료학기를 재입학 후의 수업연한과 재학연한에 각각 합산하여 계산한다.

**제16조 (합격자의 결정과 통지서)** 대학원장은 입학(편입학) 사정자료를 대학원위원회에 회부하여 합격자를 결정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합격자에게 합격통지서를 발부한다.

**제17조 (입학등록)** 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통지서를 받은 입학자와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는 소정 기일 내에 정해진 납입금을 납부하여 입학 등록을 맞춰야 한다.

② 입학 등록을 마친 자는 당해 학기 개시일 부터 학생의 신분을 갖는다.

### 제 3 장 교과과정 및 수강

**제18조 (교과과정의 편성과 이수학점)** ① 각 학위과정의 학생은 다음 교과목의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 2011. 3. 1, 2013. 3. 1, 2019. 3. 1, 2019. 5. 14)

교과목 구분	석사과정	박사과정
공통과목	최소 3학점 이상	최소 6학점 이상
전공과목	최소15학점 이상	최소24학점 이상
계	총 27학점 이상	총 39학점 이상

② 1항의 구분별 이수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학점 중 3학점은 공통과목이나 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 2013. 3. 1, 2014. 4. 21, 2019. 3. 1)

③ <삭제 2018. 3. 1>

④ 각 학위과정의 학생은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어 타학과의 교과목을 전공학과의 전공 선택 과목으로 석사과정은 12학점까지, 박사과정은 18학점까지 이를 수강 할 수 있다. (신설 2019. 3. 1, 개정 2020. 3. 1)

⑤ 대학원 공통필수인 논문작성법을 포함하여 공통교과목을 석사 3학점, 박사 6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제1항에서 규정한 공통과목의 이수학점 범위 내에서 수료학점으로 인정한다.(신설 2019. 5. 14)

⑥ 주임교수의 요청으로 대학원통합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승인하는 경우 공통과목 이수학점을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19. 5. 14)

**제19조 (교과목의 학점수)** 대학원에서 설강하는 각 교과목의 학점수는 3학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교과목의 경우에는 2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20조 (교과목의 설정)** ① 각 학과 주임교수는 제21조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교과목을 설정하고 학과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대학원통합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 1. 26, 2019. 5. 14)

② 학과별 전공에 따라서는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교과목을 공동으로 설정할 수 있다.

**제21조 (교과과정의 변경)** ① <삭제 2017. 9. 1>

② 설정된 교과목의 변경은 각 학과 주임교수가 학과 전공별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교과목을 개설하기 2개월 이전에 이를 대학원통합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9. 5. 14)

**제22조 (교과목의 개설)** 각 학과 주임교수는 편성된 교과과정 중에서 그 학기에 개설할 과목을 학과 전공별 교수회의를 거쳐 선정하고 이를 매 학기 개강 2개월 전에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3조 (수강신청)** ① 학생은 매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후 소정기간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수강신청은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지도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수강신청 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학생은 개강 후 3주일 이내에 지도교수와 학과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수강신청변경원을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6)

④ 기 이수한 과목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6학점 범위 내에서 그 이수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0. 3. 1)

**제24조 (수강과목 제한)** 동일교수가 담당하는 과목은 석사4과목 박사6과목을 초과하여 수강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교과목 지도하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예외로 수강할 수 있다. (개정 2014. 4. 21)

**제25조 (수료학기의 인정기준)** 각 학위과정의 수료학기를 인정하는 기준은 정규등록 학기 수와 수료학기말 시점의 이수 학점에 따라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3. 1)

구 분	석 사 과 정				박 사 과 정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5학기	6학기
정규등록 학기수	1학기 이상	2학기 이상	3학기 이상	4학기 이상	1학기 이상	2학기 이상	3학기 이상	4학기 이상	5학기 이상	6학기 이상
이수학점	9학점 이상	15학점 이상	21학점 이상	27학점 이상	9학점 이상	15학점 이상	21학점 이상	27학점 이상	36학점 이상	39학점 이상

### 제 4 장 학위청구 자격시험

**제26조 (종합시험의 응시자격과 시험과목)** ① 각 학위과정의 학생은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학생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응시자격이 있다.

1. 석사학위과정은 3학기 이상 정규등록한 자
  2. 박사학위과정은 4학기 이상 정규등록한 자 (개정 2013. 3. 1)
- ② 종합시험 시행에 관한 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제27조 (응시절차)** 외국어 시험 및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대학원 교학팀에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1)

**제28조 (종합시험 과목별 인정과 불합격자 재시험)** ① 종합시험은 과목별 합격을 인정하며 불합격한 자는 차후 2회에 한하여 과목별로 재 응시할 수 있다.

② 편입생의 경우 전적학교 종합시험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다. (신설 2010. 3. 1)

**제29조 (외국어시험의 응시자격)** ① 석사과정의 학생은 2학기부터 박사과정의 학생은 3학기부터 외국어 시험의 응시자격이 있다.

② 편입생의 경우 전적학교의 외국어시험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다. (신설 2010. 3. 1)

**제30조 (외국어 시험과목)** ① 각 학위과정의 외국어 시험은 영어를 시험과목으로 한다. 단, 외국인 학생은 한국어를 시험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 2015. 1. 26)

② 영어시험의 경우 TOEFL 200점(Computer Based TOEFL 기준)이상 취득자, 또는 TOEIC 750점 이상 취득자는 영어시험을 면제한다. (단, 시험접수 기간에 관련서류(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함.) (신설 2010. 3. 1)

**제31조 (시기)** 외국어시험은 매년 3월과 9월에 실시하고, 종합시험은 매년 4월과 10월에 실시한다.

**제32조 (외국어시험 불합격자 재시험)** 외국어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회수의 관계없이 재 응시할 수 있다.

**제33조 (합격인정 최저점수)** ① 외국어시험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개정 2017. 9. 1)

② 종합시험은 각 과목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제34조 <삭제 2017. 9. 1>**

### 제 5 장 학위청구논문과 심사

**제35조 (논문계획서 제출)** 각 학위과정 학생은 석사 3학기, 박사 4학기까지 논문계획서를 논문지도교수와 학과 주임교수를 경유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1)

**제35조의2 (학위논문 대체)** 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석사학위과정 학생의 경우에는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 승인 하에 졸업논문 대신 전공과목 2과목 이상을 추가로 이수하면 졸업논문으로 대

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3. 1]

**제36조 (학위논문 대체)** 학위청구논문의 체제와 규격 및 양식과 분량 등은 별도로 정한다.

**제37조 (학위청구논문의 작성용어)** 학위청구논문은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지정된 외국어로 작성한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학위청구논문을 외국어로 작성할 때에는 사전에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한국어로 작성한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8조 (학위청구논문의 제출시기)** 학위청구논문의 제출 시기는 7월과 1월로 한다. (개정 2013. 3. 1)

**제39조 (학위청구논문 제출시한)** 학생의 입학일로부터 석사과정은 6년 이내에, 박사과정은 11년 이내에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군입대 휴학기간은 이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도교수의 요청으로 대학원장의 승인 후 연장이 가능하다. (개정 2014. 4. 21)

**제40조 (학위청구논문의 제출)** ① 심사용 학위청구논문은 소정 기일 내에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학위청구최종심사가 종료된 후 최종논문 파일을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디지털 학술정보 유통시스템(dCollection)에 업로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1, 2013. 3. 1., 2023. 2. 6.)

② 학위청구논문 제출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3. 3. 1)

**제41조 <삭제 2017. 9. 1>**

**제42조 (논문 심사위원의 자격과 위촉)** ① 대학원장은 석사학위청구논문의 심사위원으로 대학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3인을 위촉하되, 교내의 전임교수 중에서 2인 이상을 위촉한다. (개정 2015. 1. 26)

②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심사위원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5인을 위촉하되, 원칙적으로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내의 전임교수이상으로 하며, 당해 학생의 주임교수가 심사위원으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반드시 3인은 본 대학교 전임교수이어야 한다. 단, 대학원장은 필요시 논문주제 관련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6)

③ 논문 지도교수는 당연직 심사위원이 된다.

**제43조 (논문 심사위원장)** 대학원장은 위원 중에서 1인을 심사위원장으로 지정하거나 위원의 호선으로 심사위원장을 선정하게 하여 심사의 진행을 주재하게 한다. 다만, 위원장은 논문심사에 있어서 위원과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

**제44조 (논문 심사위원의 교체)** 논문심사를 개시한 이후에는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없다. 다만, 질병, 출국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제45조 (논문심사 회수와 공개구술시험)** ①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경우에는 1차로 논문내용의 타당성과 적격성을 심사하여 논문을 수정·보완하게 하며, 2차로 논문 내용의 공개발표를 통하여 공개 구술시험을 과한다.

②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심사는 3차 이상으로 하되, 1차로 논문내용의 타당성과 적격성을 심사하고, 2차로 논문내용의 발표를 통하여 논문을 수정·보완하게 하며, 3차로 논문요지의 공개발표를 통하여 공개 구술시험을 과한다.

**제46조 (논문 심사자료의 제출)** 심사위원이 학위청구논문을 인정할 때에는 논문 제출자에게 인용한 문헌이나 그 번역본, 참고문헌, 도형, 표본, 기타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47조 (심사위원의 정족수)** 학위청구논문 심사는 심사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박사학위 심사는 부득이한 경우 재적위원 5분의 4이상의 출석으로 심사할 수 있다.

**제48조 (논문의 반려)** 논문심사위원회에서는 논문내용의 미비, 기타의 사유로 심사를 부결하였을 때에는 대학원장에게 보고하고 학위청구논문을 반려한다.

**제49조 (심사의 방법)** 학위청구논문 심사는 논문 심사와 구술시험으로 한다.

**제49조의 2 (논문지도학생 수)** 교수1인당 논문지도 학생수는 학기별 석사학위 과정은 4인 이내, 박사학위 과정은 6인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이를 초과하여야 할 경우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신설 2011. 3. 1, 개정 2015. 1. 26., 2021. 9. 15.)

**제49조의 3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 제출)**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윤리 준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 3. 1)

**제49조의 4 (학위의 취소)** 학생이 제출한 논문이 대필 및 부정행위가 입증될 경우 대학원위원회를 거쳐 학위를 취소한다. (신설 2011. 3. 1)

**제49조의 5 (지도교수 징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학위에 대하여 학위 취소 및 관련 교원을 대학원위원회에 징계 회부할 수 있다. (신설 2011. 3. 1)

**제50조 (논문심사의 기간과 기간 연장)** 석사학위와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심사는 개시일로부터 각각 1개월과 2개월 이내에 논문심사와 공개 구술시험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학위청구논문의 수정·보완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회에 한하여 6개월까지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1조 (합격된 논문 제출)** ① 합격된 논문은 규정된 서식에 의하여 제출하고, 대학원에 비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항 신설 2015. 1. 26)

② 논문심사가 완료된 학위논문 제출시 표절검사 결과 확인서를 소정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6)

**제52조 (논문 심사의 판정)** 학위청구논문과 심사 및 공개구술시험에 대한 심사위원의 개별 성적은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 석사학위청구는 심사위원 2인 이상, 박사학위청구는 심사위원 4인 이상의 찬성으로 심사의 통과를 판정한다.

**제53조 (논문 심사의 결과보고)** 심사가 완료되면 심사위원장은 각 위원의 심사요지와 심사결과보고서를 소정 기일 내에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4조 (학위수여의 확정)** 대학원위원회는 석사학위와 박사학위의 수여 여부를 결정하고 대학원장은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 학위 수여를 확정한다.

## 제 6 장 등록, 휴학, 복학 및 제적

**제55조 (등록)** ① 각 학위과정의 학생은 교과목 이수,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 논문연구와 실험, 학위논문작성 등 학위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석사과정에서는 최소 4학기, 박사과정에서는 최소 6학기의 정규 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9. 5. 14)

②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학생이 논문준비 등을 위하여 일정액을 납부하는 것을 연구등록이라 한다.(신설 2019. 5. 14)

**제55조의 2 (연구등록)** 대학원생은 수료 후 논문심사를 진행하는 학기에 한하여 소정의 연구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19. 5. 14)

**제56조 (학기당 이수학점 초과 수강자의 등록)** 학기 당 12학점을 초과하여 수강하는 학생은 정규 등록금의 3분의 1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57조 (수업연한 초과자의 학점등록)** 수업연한을 초과하였으나 미수료인 상태에서 교과목을 신청하는 학생은 신청학점 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학점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9. 5. 14)

1. 6학점이상 : 정규등록

2. 3학점 초과 6학점 미만 : 정규등록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학점 등록

3. 3학점 이하 : 정규등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학점등록

**제58조 (휴학의 종류)** 휴학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휴학 : 질병, 사고, 가정사정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휴학

2. 군입대 휴학 : 교육소집 또는 입영통지서를 받고 군에 입대하기 위한 휴학

**제59조(휴학절차)** ① 일반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등록기간 내에 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휴학의 경우에는 4주 이상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군 입대 휴학 자는 입영통지서 사본 또는 군복무 확인서를 첨부하여 군입대 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일반 휴학 중 군에 입대할 경우 다시 군입대 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0조 (복학)** ① 일반휴학 자는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등록기간 내 복학하여야 한다.

② 군 입대 휴학 자는 전역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기간 내 복학하여야 하며, 개강 후 4주 이내에 전역예정자에게도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61조** <삭제 2015.12.23>

## 제 7 장 주임교수와 지도교수 및 논문지도위원회

**제62조 (주임교수의 직무)** 학과 주임교수는 해당 전공별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교과목 설정과 변경 및 설강, 지도교수의 제청, 기타 해당 전공의 각종 학사업무를 관장한다.

**제63조 (주임교수의 임명)** ① 각 학과의 주임교수는 부교수 이상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학과 주임교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제64조 (지도교수의 위촉과 시기)** 각 학위과정 학생의 지도교수는 입학 후 1학기부터 학생이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학과 주임교수의 제청서에 의하여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 4. 21, 2017. 9. 1)

**제65조 (지도교수의 자격)** ① 각 학위과정 학생의 지도교수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내 조교수 이상으로 한다. 단, 전문분야 전문가도 경력을 감안하여 각 학과별 주임교수의 제청에 의해 필요에 따라 대학원장의 승인 하에 공동지도교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6., 2021 9. 15.)

② 학생이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전임교원일 경우에 지도교수는 제1항의 자격을 가진 교원으로 당해 학생과 동급 이상인 자로 한다.

**제66조 (지도교수의 직무)** 지도교수는 해당 학생의 수강신청을 포함하여 학사 및 학업을 지도하고 논문연구와 실험 및 학위논문의 작성을 지도한다.

**제67조 (지도교수의 변경)** 지도교수가 치병, 장기해외출장이거나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학생의 지도가 어려울 때에는 학과 주임교수가 지도교수 변경원을 제출 할 수 있으며,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8조 (논문지도위원회의 구성)** ① 학생 개인별 논문지도를 목적으로 지도교수를 포함한 3인 이상의 위원으로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논문지도위원회의 자격은 지도교수의 자격에 준 한다.

**제69조 (논문지도위원회의 직무)** 논문지도위원회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담당학생의 논문연구와 논문계획서 및 논문 작성에 대한 지도 및 심사

2. 담당학생의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회의 추천

**제70조 (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 ① 학위청구논문의 연구와 지도를 위하여 석사과정 학생은 3

학기 박사과정 학생은 4학기까지 학위청구논문연구 계획서를 지도교수에게 제출한다.

② 지도교수는 담당학생의 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를 심사하고 수정·보완하게 하여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한다.

③ 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된 학위청구논문연구계획서를 지도교수의 심사와 학과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0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0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14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15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23)**

① (시행일) 이 대학원 학칙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8조 규정은 2017학년도 전기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 5. 14)**

- ① (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공통교과목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제18조 5호에 의거하여 신설된 공통과목(논문작성법) 은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 시행한다.
- ③ (연구등록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제55조의 개정규정 중 신설된 연구등록금은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9. 15.)**

- ① (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2. 6.)**

- ① (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